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 · 도 지 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

신청인 제출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 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